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올해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정비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바,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타법 개정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소비자정보 이용 허용(안 제22조)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정보를 허락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가 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법 제34조제10호)하고 있는바,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

나. 영업정지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기준 명시(안 제27조)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영업정지시,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기준을 명시함

다.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거나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들에 대하여 차수별 부과금액을 정하고 기준을 구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5항”을 각각 “법 제1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7조의2”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목 위반행위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별표 2 제2호에 나목 위반행위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나목가목2)를 삭제하며, 같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

별표 2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자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의 2	1,000	2,500	5,000
---	------------------	-------	-------	-------

별표 4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의 2	600	1,500	3,000
---	------------------	-----	-------	-------

별표 4 제2호너목(중전의 거목) 너목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중전의 너목) 더목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법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9호의 2	200	500	1,000
---	------------------	-----	-----	-------

별표 4 제2호오목(중전의 모목) 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53조 제2항제11호	600	1,500	3,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53조 제2항제11호	100	200	500
초.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53조 제2항제12호	600	1,500	3,000

른」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중 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53조 제2항제12호	100	200	500

별표 4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코. 법 제47조제2항에 따 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81조제2항에 따 른 조사를 거부·방해하 거나 기피한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53조 제1항제3호	1,000	2,500	5,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중 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53조 제1항제3호	200	500	1,000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④ (생략)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5항----- ----- ----- ----- ----- ----- ----- ----- ----- -----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 ----- ----- 법 제18조제6항-----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② ----- ----- -----		

있거나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
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
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같은 법 제7조의 2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생략)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 같은 법 제18조제

1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1항-----

총리령-----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
회사

2. 3. (생략)

③ ~ ⑥ (생략)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① 법 제34조제10
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법 제34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2.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
는 경우

② -----

-----.

1. -----

-----.

우 가. 「<u>전기통신사업법</u>」 제5 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 통신사업자 나. ~ 라. (생략) 2. (생략)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생략) <신설>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 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략)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불 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 가. 「<u>전기통신사업법</u>」----- ----- -----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이 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 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제19조제1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2조제1항----- -----
---	--

신고에 관한 사무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432